

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9. 9. 23.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. 9. 28.

다. 상정일자 :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	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제2차	본회의 상정, 토론 및 검토
제3차	본회의 상정, 검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, 경제투자 활성화 및 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2009.7.16 대통령령 제21629호)됨에 따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1호의 가목,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(안 제3조)
- 공사용 현장사무소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(안 제21조)
- 관광시설 및 골프장 등에 대하여 조경 적용 완화(안 제25조)
-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(안 제25조의2)
-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, 다양한 공동주택(도시형 생활주택 등)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(안 제32조)
-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업판촉활동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한 사용이 가능토록 완화 (안 제3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 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대통령령 제21629호 (2009. 7. 16)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투자 활성화 및 건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및 같은 법 제24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